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박희진 의원외 9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2월 5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9일 박희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중증장애인의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자립생활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바.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,
-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,
-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절차·확정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5조는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6조는 자립생활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7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,
-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·결정하여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,
- 본 조례는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,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, 자립생활 지원·신청, 업무의 위탁 등이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가 없음.
- 그러나, 조례제정 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존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 사업비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.